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2. 18.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2월 3일

나. 발 의 자: 유승용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5년 2월 11일

라. 상정일자: 제25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5. 2. 1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유승용 의원)

가. 제안이유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로수를 통한 생활·교통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가로수의 수종선정 기준, 식재위치, 식재시기 등(안 제5조~안 제7조)
- 병해충의 방제(안 제10조)
- 식재기준(안 제11조)
- 가로수 보호(안 제12조)
- 가로수 관리의 구민참여 등(안 제15조)

- 가로수 조성과 관리의 민간위탁(안 제16조)
- 원상회복명령 등(안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류데레사)

- 본 조례안은 폭염완화, 미세먼지 흡착 등 도심 속에서 이로운 역할을 하는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규정함. 상위법의 제명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나, 법에 규정된 내용 중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함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1조(목적)는 본 조례안에서 달성하려는 목적을 명시하여 구민들이 입법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
 - 안 제2조(정의)는 법에서 정의하지 않은 생소한 단어들을 정의하여 구민들이 보다 쉽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3조(기본원칙)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 관련 별지2 제1호(기본방향 및 일반기준)를 근거하여 적절히 규정
 - 안 제4조(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 시행)는 광역지자체인 서울시와 우리 구 가로수기본계획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이하 “서울시 조례”라 한다) 제4조(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 내용과 유사하게 규정하였고, 이미 우리 구에서는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에 근거규정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안 제5조(수종선정 기준 등)는 가로수의 수종선정 기준, 진단조사의 방법 등은 시행령 별표2에 규정을 인용함에 따라 입법경제성을 제고하고자 함
 - 안 제6조(식재위치)는 시행령 별표2 제3호(심는 지역 기준)에서는 국민안전 등을 위하여 식재 불가지역에 대해 열거하고 있으며, 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구민의 안전 및 가로수의 보호를 위하여 식재위치를 추가로 규정
 - 안 제7조(식재시기)는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이하 “조성·

- 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참고하여 규정
- 안 제8조(바뀌심기 및 메워심기)제1항은 시행령 제7조제3항에 규정된 별표2 제4호(관리기준)제가목에 따르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는 가로수의 바뀌·메워심기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 안 제9조(가지치기)제1항은 시행령 별표2 제4호(관리기준)제나목에 규정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한 가로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안 제10조(병해충의 방제)는 시행령 별표2 제4호(관리기준)제다목에서 지자체의 장에게 병해충 방제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해당 사항을 명시
 - 안 제11조(식재기준)는 상위 지자체인 서울시 기준과 통합성을 유지하고자 서울시 조례 제7조(가로수의 식재기준)에 맞추어 규정
 - 안 제12조(가로수 보호)제1호 및 제2호는 시행령 별표2의 내용을 참고, 제4호 및 제5호는 서울시 조례를 참고하여 규정
 - 안 제13조(가로수 관리시설물)도 시행령 별표2를 참고하여 규정
 - 안 제14조(점검) 및 안 제15조(가로수 관리의 구민참여 등)또한 서울시 조례에 규정된 내용과 취지가 같음
 - 안 제16조(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민간위탁)제1항은 전문적인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규정된 자들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였으며, 제2항은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 전문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 관련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 안 제17조(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는 법 제12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규정
 - 안 제18조(원상회복명령 등)제1항은 법 제22조에 근거하여 규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안 별표에 규정하였고, 비용의 산정기준은 서울시 타자치구들이 정하는 수준과 비슷하게 규정
 - 안 제19조(관리대장)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서 관리대장 작성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해당 사항을 명시
 - 위와 같이 각 조항들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범위 내에서 적정히 규정되었으며 입법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검토 결과

- 가로수는 일상 속에서 녹음과 단풍으로 구민들께 작은 쉼터가 될 뿐만 아니라 ▲폭염완화 ▲탄소 흡수 ▲미세먼지 흡착 ▲소음감소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가로수의 폭염완화 기능으로는 그늘막 보다 표면온도를 7℃ 더 낮추어 열 저감에 25%나 효과적이며, 또한 가로수 1주의 연간 탄소 흡수량은 203.3kg으로 가로수 2,000주를 심으면 연간 406.6톤(자동차 170대의 연간 탄소 배출량)의 탄소를 흡수하여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탄소 저감에도 효과적임.
- 또한 40년생 나무 1그루의 연간 미세먼지 흡수량은 35.7g을 흡수할 수 있고 가로수 47그루는 경유차 1대가 연간 내뿜는 미세먼지 1,680g을 흡수하며, 도로변 가로수는 자동차 소음을 75%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도심 속 가로수는 “녹색 혈관”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있음.
- 한편, 지구온난화로 여름철 폭염이 극심해지고 있으며,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 1월 “지난해가 근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인 해였다”라고 밝혔고, 우리나라 역시 기상청에 따르면 연평균 기온은 14.5℃로 평년보다 2.0℃ 높았으며, 종전 1위인 2023년(13.7℃)보다도 0.8℃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서울시의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통계를 살펴보면, 전년 대비 발령횟수의 증가·감소가 번갈아 나타나고 있으나,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고, 매년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로 인해 약 700만명이 조기 사망한다고 분석한 것을 고려했을 때, 구민의 보건과 안전을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본 조례안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도심 속 문제인 폭염·미세먼지 등 저감에 효과적인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정원도시인 우리 구의 미관 증진은 물론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여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5
------------	-----

발의연월일: 2025. 2. .

발 의 자: 유승용, 차인영, 이예찬
이순우 의원(4인)

1. 제안이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로수를 통한 생활·교통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나. 가로수의 수종선정 기준, 식재위치, 식재시기 등(안 제5조~안 제7조)
- 다. 병해충의 방제(안 제10조)
- 라. 식재기준(안 제11조)
- 마. 가로수 보호(안 제12조)
- 바. 가로수 관리의 구민참여 등(안 제15조)
- 사.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민간위탁(안 제16조)
- 아. 원상회복명령 등(안 제18조)

3. 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로수를 통한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교통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로수”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2. “바꿔심기”란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해당 구간에 적정한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3. “메워심기”란 일정한 간격으로 심겨진 가로수 일부가 빠져 있거나 고사한 곳에 적정한 가로수를 대신 심는 것을 말한다.
4.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이라 한다)을 말한다.
5. “가로수 보호대”란 정류장·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을 말한다.
6. “가로수 지주대”란 가로수를 기상에 따른 피해와 인위적인 피해로

부터 보호하고 활착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이하 “지주대”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녹지공간을 확대한다.
- ②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공간을 제공한다.
- ③ 도시숲 및 생활숲과 연계되어 생활환경을 보전하는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 ④ 가로수의 진료(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은 「산림보호법」에 따른다.
- ⑤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업무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제4조(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가로수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 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노선별 가로수 기본 식재수종
4. 양질의 가로수 증진과 정비 방안
5.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 계획 등

6. 그 밖에 구청장이 가로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가로수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수종선정 기준 등) 가로수의 수종선정 기준 및 제4조제3항에 따른 진단조사의 방법·대상·절차 등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에 따른다.

제6조(식재위치) 가로수는 시행령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의 너비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7조(식재시기)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제8조(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① 가로수의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는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바꿔심기 또는 메워심기를 할 때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

제9조(가지치기)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가로수의 생육, 미관, 도로안전, 차량 등의 통행 및 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지치기는 제16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병해충의 방제) ① 구청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고지하는 등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바꿔심기·메워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른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구민·보행자·운전자 또는 동·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토양 오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를 필요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월동 중인 유충을 잡기 위해 쪼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병해충 방제업무는 제16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식재기준)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1. 교목의 식재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식재 간격은 6미터~8미터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위치와 주변 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성장 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한 열식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녹음제공·경관보정 등 특정 목적에 따라 군식·혼식할 수 있다.

다.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2.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식재할 수 있다.

3.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4.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12조(가로수 보호) 구청장은 가로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한다.

1. 재해·재난 등의 피해를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로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노거수(老巨樹), 보호수 등의 가로수에 대해서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통기·관수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제16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2. 가로수를 심은 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육환경 개선, 환토(換土: 흙바꾸기)·객토(客土: 새 흙넣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가로수의 일원에서 가로수의 수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공사시행 전에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4. 동절기 도로 제설을 위해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더미가 식수대(植樹帶: 가로수를 심으려고 길거리나 광장 따위에 마련한 터전) 내에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가로수의 식재지 또는 가로수 조성계획지에 대한 절토·성토 등 지형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

음 수립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성토

나. 보행자,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토·성토

다. 도로의 신설·개축·수선·유지보수공사 등을 위한 절토·성토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절토·성토 등 지형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가로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3조(가로수 관리시설물) ① 가로수의 관리에 필요한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관수시설 등의 시설 및 장비는 가로수의 생육 및 보행자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로수 관리시설물 등의 설치·관리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제14조(점검) ① 구청장은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바뀌심기가 필요한 가로수, 병해충의 감염 여부, 메워심기가 필요한 고사목, 신규 식재된 가로수의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 점검은 매년 5월에 실시하며 수시 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하여야 할 경우와 신규 식재·바뀌심기·메워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할 수 있다.

제15조(가로수 관리의 구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가로수 관리의 구민참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 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구청장에게 신고
5. 비상 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 구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가로수 보호틀 또는 가로수 보호대 또는 가로수 지주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③ 구청장은 구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민간위탁) ① 구청장은 가로수의 조성 · 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된 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②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에 따라 나무병원으로 등록한 자 또는 「산림조합법」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17조(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가로수 조성 및 관리”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원상회복명령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9조(관리대장) 구청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가로수 조성·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은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